

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2. 6. .
제출자 : 이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근거를 마련함(제2조)
- 나. 공유재산의 대부 근거를 마련함(제3조)
- 다.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함(제4조)
- 라.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함(제5조)
- 마.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(제6조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) 시장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법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 (공유재산의 대부) 시장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제4조 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5조 (행정지원)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 (권한의 위탁) 시장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)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되는 날까지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지역경제과
임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지역경제과장 차태익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예담당 이교관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정병 (644-2281)